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31일, 구자근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9.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구자근의원)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주택·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통계청이 1961년 이후 경제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통계체제가 국가발전 중 특히 경제발전과 궤를 같이 해왔고, 지난 시대에는 경제통계가 중요했으므로 경제 부처에 소속되는 것이 적절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시대에서는 보건·농림수산·과학기술·정보통신·교육문화·환경 등 정책 분야별 통계가 중요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들(빅데이터·인공지능·사물인터넷·메타버스·클라우드 등)이 모두 데

이더 기반의 디지털 기술임을 감안할 때,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두기보다는 범부처 및 지자체 등 통계기관통계데이터들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다양한 정책 분야별 통계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생산·수집·관리·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속의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처로 승격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은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 등 집행적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행정기관 및 민간영역까지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기구의 형태로 ‘청’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는 대다수 통계가 경제 분야·정책에 활용되는 주요 사항이므로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획재정부 소속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는 반면,

통계청은 현재 경제·사회·환경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있는 것은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가 경제 부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된 사실¹⁾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을 수용하는 의견임.

1) 공정거래위원회는 1994.12. 종전 경제기획원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08.2. 종전 국무총리 소속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국제금융 기능은 신설된 기획재정부에 존치)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였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자료 및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누리집 참고)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다양한 정책 분야별 통계를 관리·조정하는 기관으로서 통계청의 소속 및 기관을 재정비하려는 입법취지, 정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